

○○○고등검찰부

제 호 20 . . .
수 신: ○○ 보통검찰부장
제 목: 공소제기 명령

20 재정 제 호 재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유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「군사법원법」 제30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령합니다.

○○○고등검찰부장 (서명 또는 인)